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교 육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카드뉴스 전파(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)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2650('19.7.30.)
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 「고등교육법」의 시행일인 2019. 8. 1.부터 시간강사도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.

3.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귀 기관(학교)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에 반영 및 카드뉴스 전파 등 협조 부탁드립니다.

붙임 1.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.
2.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카드뉴스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,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,고등교육정책과장,국립대학정책과장,사립대학정책과장,학술진흥과장,대학재정장학과장,대학학사제도과장,대입정책과장,교육일자리총괄과장,산학협력정책과장,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,전문대학정책과장,이러닝과장

교육연구사 **전성원** 반부패청렴담당관 전결 2019.8.1. **엄진섭**

협조자

시행 반부패청렴담당관-5228 (2019. 8. 1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087 팩스번호 044-203-6093 / rail0880@korea.kr / 대국민 공개